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평생의 약속, 달러로 보장의 가치를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01.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의 곁을 떠날 경우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 드립니다.

- 가입하는 순간부터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02.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선지급해 드립니다.

- 노후소득 지급기간 동안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매년 자동감액하고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노후소득 선지급금으로 지급 가능하여, 이를 통한 노후소득으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03. 미국 달러로 보장해 드립니다.

- 기축통화인 달러로 사망보험금 및 노후소득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미래의 달러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노후소득을 달러로 지급받으므로, 자녀를 위한 유학자금 및 해외여행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04. 계약 유지 중에도 종신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도성특약을 활용하여 간병자금, 노후자금, 여생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필요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제도성특약 부가시)
- 가입시점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노후 준비에 효과적이며, 고객 니즈에 따라 원하는 비율만큼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가입 후 10년 경과 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05.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지급률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06. 재정상황이 악화되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감액완납보험, 연장정기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07. 보험료 할인 및 세액공제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 100,000달러 이상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자동이체 납입시 보험료의 1% 할인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세제관련 법규 변경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우리 가족의 평생자산

사망보장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의 곁을 떠날 경우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상속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자산의 활용

노후소득 선지급

매년 사망보장의 일부를 감액하여 감액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노후소득 선지급”으로 노후소득 선지급 신청일부부터 노후소득 지급기간(10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 선지급 후 잔여 주계약 사망보장은 종신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후소득 선지급금은 “선지급개시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5%”를 말합니다.

연금전환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의무부가특약 : (무)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 ※ 가입후 10년 경과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 ※ 거치적립기간이 있는 경우, 연금전환 이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1.0%)로 최대 10년까지 운용한 이후 연금개시 가능 (연금개시나이 : 45세~80세)
- ※ 연금형태 : 종신연금(100세보증), 확정연금(5/10/15/20년 확정), 상속연금
- ※ 보험료 납입한도 :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이상

유가족연금전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의무부가특약 : (무)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
- ※ 연금형태 : 종신연금(100세 보증), 확정연금(5/10/15/20년 확정), 상속연금
- ※ 신청 가능 대상 :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 ※ 연금전환나이 : 0~80세(단, 종신연금은 45세~80세)
- ※ 보험료 납입한도 :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이상

간병자금

실버널싱케어특약을 추가하여 60세 이후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사망보장금액의 최고 80%까지 장기간병 선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장기간병상태 : 중증치매(CDR척도 3, 4, 5점) 또는 일상생활 장애상태(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화장실/목욕/옷 입기 중 1가지를 스스로 못하는 상태)
- ※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실버널싱케어특약의 장기간병 선지급금 신청은 피보험자가 만60세 이상이며 보험료가 완납된 계약에 한합니다.
- ※ 노후소득 지급기간 중에는 장기간병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품내용

가입안내

- 보험기간 : 종신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5년납	만 15세 ~ 70세	55세납	만 15세 ~ 43세
10년납	만 15세 ~ 70세	60세납	만 15세 ~ 48세
15년납	만 15세 ~ 62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20년납	만 15세 ~ 59세	70세납	만 15세 ~ 60세
25년납	만 15세 ~ 55세	75세납	만 15세 ~ 65세
30년납	만 15세 ~ 50세	80세납	만 15세 ~ 70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최저 50,000달러 이상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 :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시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 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이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이용하여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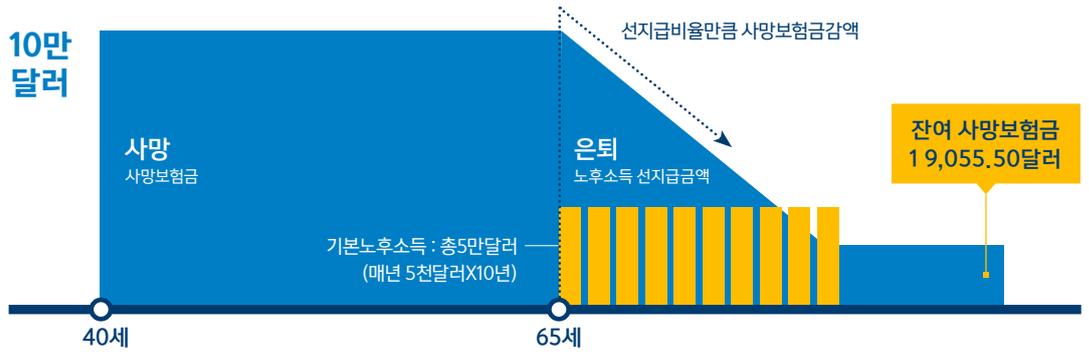
도해도

1. 노후소득 선지급 미신청시 _ 상속재원으로 활용



※ 남자 40세, 100,000달러 가입, 20년납, 노후소득 선지급 미신청시, 월납보험료 : 221달러

2. 노후소득 선지급 신청시 _ 노후자금으로 활용



※ 남자 40세, 100,000달러 가입, 20년납, 65세 노후소득 선지급 신청시, 월납보험료 : 221달러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00달러, 20년납, 월납, 단위 : 달러

보험료 예시

가입나이	30세	40세	50세
남자	170	221	294
여자	149	193	254

※ 이 보험료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3.2%입니다.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100,000달러, 20년납, 월납, 단위 : 달러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52	-	0%
3년	7,956	4,171	52%
5년	13,260	9,133	68%
10년	26,520	21,379	80%
15년	39,780	34,489	86%
20년	53,040	49,573	93%
30년	53,040	62,695	118%
40년	53,040	76,011	143%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 등이 상기 예시의 기준과 다른 경우,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02

상품내용

사망보험금의 노후소득 선지급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매년 자동감액하고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노후소득 선지급금”으로 하여 노후소득 지급기간(10년) 동안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노후소득 선지급금은 “선지급개시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5%”를 말합니다.
- ※ 노후소득 선지급금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노후소득 지급기간(10년) 동안 매년 노후소득 선지급 신청 해당일에 지급됩니다. 단, 해당 월에 노후소득 선지급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노후소득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 노후소득 선지급 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에서 정의한 선지급비율 만큼 감액됩니다.
 - * 선지급비율 = 노후소득 선지급금 ÷ 노후소득 선지급직전 해지환급금
 - * 노후소득 선지급 후의 보험가입금액 = 노후소득 선지급직전 보험가입금액 X (1 - 선지급비율)
- ※ 노후소득 선지급은 남자 60세에서 80세사이, 여자 61세에서 80세사이(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나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노후소득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노후소득 선지급 중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더 이상 노후소득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노후소득 선지급을 중지한 경우에는 다시 노후소득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노후소득 선지급기간 중에는 노후소득 선지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외의 감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노후소득 선지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사망보험금의 노후소득 선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달러평생보장보험의 노후소득 선지급시에는 노후소득 선지급으로 인한 가입금액 감액비율과 동일한 비율만큼 달러유니버설특약의 적립금도 감소하며, 감소된 적립금은 지급처리 됩니다.

<노후소득 선지급 지급 예시>

기준 : 노후소득 선지급 신청나이 60세, 노후소득 선지급개시 직전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100,000달러
노후소득 선지급 직전의 해지환급금 : 50,000달러

- ▶ 노후소득 선지급금 : 5,000달러 [= 보험가입금액의 5%]
- ▶ 선지급비율 : 10% [= 5,000달러 / 50,000달러]
- ▶ 노후소득 선지급 후의 보험가입금액 : 90,000달러 [= 100,000달러 X (1 - 선지급비율(10%))]

원화환산납입 서비스특약II (의무부가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그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등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부가됩니다.

보험료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보험료 등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납입형태는 '납입일 - 제1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제1회 보험료	계약일 - 제1영업일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자동이체 이외)	납입일 - 제1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자동이체 이외)	추가납입신청일 + 제1영업일

- ※ 추가납입보험료: 달러유니버설특약(부가가능특약) 부가시 납입 가능
- 특약보험료: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제외)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추가납입 신청 후 제2영업일에 납입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보험료 납입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예시]

7월 2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18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0원이고, 7월 4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23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5원 일 때,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7월 2일 1달러=1,120원, 7월 4일 1달러=1,125원을 각 해당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납입기준환율(1달러)	1,130원	1,120원	-	1,125원	1,115원

- 주계약을 7월 4일에 가입(계약),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제1회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계약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0원 = 112,000원을 제 1회 보험료로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0원 = 112,000원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이외),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납입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납입기준 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5원 = 112,500원을 납입
- 7월 2일에 추가납입보험료(자동이체 이외) 100달러를 추가납입 신청한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추가납입신청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납입기준 환율에 따라 100달러 × 1,125원 = 112,500원을 '추가납입신청일 + 제2영업일'인 7월 5일에 납입

* 단, 납입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계약의 무효,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등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납입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 드립니다.

02

상품내용

원화환산지급 서비스특약II (부가가능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그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지급금의 환산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달러유니버설특약의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환산기준일을 따릅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보험금	청구일 - 제1영업일	
인출금	인출신청일 + 제1영업일	
해지환급금	임의해지	해지신청일 + 제1영업일
	임의해지 이외	해지일 - 제1영업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금 지급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지급금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 단, 지급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의 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

7월 4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07원,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이 1달러=1,100원 일 때,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사이의 1달러=1,105원을 지급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지급기준환율(1달러)	1,110원	1,100원	-	1,105원	1,095원

7월 2일에 임의해지를 신청하고, 해지환급금이 2,000달러인 경우

⇒ 해지환급금의 환산기준일은 '해지신청일+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2,000달러x1,105원=2,210,0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단, 무배당 달러가족수입특약에서 정한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사망일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월급여금	청구일 - 제1영업일
청구일의 다음날 이후 월급여금	월급여금 지급해당일 - 제2영업일
장래 월급여금 현가의 일시 지급금	일시 지급 청구일 - 제1영업일

달러유니버설특약 (부가가능특약)

이 특약을 부가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추가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추가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 ※ 이 특약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므로, 필수적으로 납입하여야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 달러평생보장보험은 세법 상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관련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달러유니버설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세법 상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보험차익비과세 한도에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달러평생보장보험의 노후소득 선지급시에는 노후소득 선지급으로 인한 가입금액 감액비율과 동일한 비율만큼 달러유니버설특약의 적립금도 감소하며, 감소된 적립금은 지급처리 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특약 성립 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매월 해당월까지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 ※ 납입한도는 해당월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입니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 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합니다.
- ※ 다만, 미(美)국고채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美)국고채수익률은 미(美)재무부가 공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합니다.

추가계약자적립금의 인출

특약의 성립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추가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추가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추가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02

상품내용

원화고정납입 옵션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II와 달러유니버셜특약이 모두 부가된 경우에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로 환산된 납입보험료'(이하 '원화환산보험료')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고정된 원화 납입보험료'(이하 '고정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 원화고정납입옵션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II의 옵션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II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을 신청하면, 신청시점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 150% 중 천원단위로 선택한 고정납입보험료로 보험료를 납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환산기준일은 '신청일 - 제1영업일'로 합니다.

※ 고정납입보험료의 납입시에는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II에서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을 따릅니다.

고정납입보험료에서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로 하며, 미화로 환산되고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립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없습니다.

[예시]

원화고정납입옵션 신청시 고정납입보험료 선택 범위

(주계약 보험료: 100달러, 옵션 신청일 - 제1영업일 납입기준환율: 1달러=1,130원 가정)

$100\text{달러} \times 100\% \times 1,130\text{원} = 113,000\text{원}$, $100\text{달러} \times 150\% \times 1,130\text{원} = 169,500\text{원}$

⇒ 113,000원과 169,500원 사이에서 천원단위로 선택

고정납입보험료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 계산

(주계약 보험료:100달러, 특약 보험료:10달러, 고정납입보험료 120,000원, 해당 회사 보험료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 1달러=1,000원 가정)

$120,000 / 1,000 = 120\text{달러}$

⇒ 120달러-110달러(주계약 및 특약보험료)=10달러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함(환율에 따라 변동)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주계약 보험료:100달러, 특약 보험료:10달러, 고정납입보험료 120,000원, 해당 회사 보험료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 1달러=1,500원 가정)

$120,000 / 1,500 = 80\text{달러}$

⇒ 110달러(주계약 및 특약보험료)가 고정납입보험료(120,000원=80달러)를 초과하므로, 110달러의 원화환산보험료(110달러 x 1,500원=165,000원)를 해당 회사 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함

알아두실 사항

1.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3.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 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자동납부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KEB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